

2020년도 제 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

1. 일 시 : 2020년 8월 19일(수요일) 오전 10시

2. 장 소 : 대학본부 3층 회의실

3. 개회기도 : 김금자 총장

4. 출석현황 : (정원 5명)

구성위원	참석자명단	불참자명단
교직원	김금자(총장) 배진희(기획처장) 박용선(사무처장)	
학생	최희정(총학생회장)	
관련전문가	최종문(회계사)	최종문(회계사)
합계	5명	1명

5. 참관인 : 간사 박지현(회계담당)

6. 안건 :

- 1) 예수대학교 교비 적립금 용도변경 및 사용에 관한 사항
- 2)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·의결

7. 성원확인 및 개회선언

- 의장이 성원을 확인하고 개회선언을 하다.

8. 회의내용

1) 제 1호 의안 : 예수대학교 교비 적립금 용도변경 및 사용에 관한 사항

-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니 박용선 사무처장이 적립금 예산수입 편입 시 사용 용도를 명시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적립금 용도변경 및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집행하고자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설명하다.

- 아 래 -

변경 전			변경 후		
구분	금액	용도	구분	금액	용도
임의건축적립금	132,000,000원	건축기금	임의건축적립금	100,000,000원	건축물 및 시설관리
임의기타적립금	15,000,000원	없음	임의장학적립금	47,000,000원	코로나19 특별장학금

- 논의 후 적립금 용도변경 및 사용에 관한 심의·의결에 대한 의원들이 심의를 요청하니,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최희정 의원의 동의와 배진희 의원의 제청으로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, 적립금 용도변경 및 사용 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하다.

2) 제 2호 의안 :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·의결

-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니 박용선 사무처장이 대학중요정책 심의 기구 추진부서의 다각화 일환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부서를 변경하기 위해 본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설명하다.

-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부서는 기존 사무처에서 기획처로 변경하고자 함을 설명하다.

- 의장이 기금운용지침 개정에 관한 심의·의결에 대한 의원들의 심의를 요청하니,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최희정 의원의 동의와 배진희 의원의 제청으로 가부를 물어

만장일치로 찬성하니 의장이 원안대로 심의·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9. 폐회선언

-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10시 40분 이었다.

확인 : 김금자 의원

김금자
(인)

배진희 의원

배진희
(인)

박용선 의원

박용선
(인)

최희정 의원

최희정
(인)

기록 : 박지현 간사

박지현
(인)

[별지 제1호 서식]

규정 입안서					
1. 규정명	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				
2. 구분	제정() 일부개정(√) 전부개정() 폐지()				
3. 부서	사무처				
4. 제안사유 (제정, 개정, 폐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대학중요정책 심의기구 추진부서의 다각화 일환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부서를 변경하기 위해 개정함				
5. 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간사위총을 사무처 회계담당 직원에서 직원으로 변경사무관장부서를 사무처에서 기획처로 변경				
6. 참고사항	<table border="1"><tr><td>① 관련규정</td><td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4-3-6 대학발전기금 관리규정</td></tr><tr><td>② 합의사항</td><td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/td></tr></table>	① 관련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4-3-6 대학발전기금 관리규정	② 합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
① 관련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4-3-6 대학발전기금 관리규정				
② 합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				
7. 자문요청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해당 사항 없음				
붙임 1. 신구조문대비표(개정규정) 1부. 2. 규정전문(제정, 개정, 폐지 규정) 1부.					
2020년 08월 00일					
사무처장 기획처장 귀하					

<별지 1호 서식: 붙임2>

신·구조문대비표<예시>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제5조(구성)①~④(생략) ⑤ 간사는 사무처 회계담당 직원 중 총장이 위촉한다.	제5조(구성)①~④(현행과 같음) ⑤ 간사는 직원 중 총장이 위촉 한다.	간사위촉을 사무처 직원에서 직원으로 확대
제10조(사무관장)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는 사무처에서 관장한다.	제10조(사무관장)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.	사무관장부서를 사무처에서 기획처로 변경

<별지1호 서식: 불임3> 제정 및 개정, 폐지 규정 전문

3-2-2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예수대학교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「사립학교법」, 「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」, 「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」에 대한 특례규칙 및 기타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“기금”이라 함은 대학의 연구장려, 건축비용 충당, 장학금 지급, 퇴직금 지급, 대학발전 등을 위하여 별도로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사립학교법 제32조의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
3. 기타 기금운용 관련 주요 사항

제5조(구성) 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위촉한다.

-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, 기획처장과 사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- ③ 회계 및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.
- ④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생 대표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.
- ⑤ 간사는 직원 중 총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20.08.00>

제6조(임기)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- ② 회계 및 재무 관련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③ 학생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④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결원 발생 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, 회의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다.
- ④ 위원으로 위촉된 학생대표가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에 갈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학생 대표를 대리로 참석 시킬 수 있다. 단, 대리참석 시 위임장으로 위원장에게 회의개최 2일전까지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장은 위원회 기능의 수행을 위해 필요 시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8조(권리와 의무) ①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며, 업무상 알게 된 투장정보 및 기타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.

② 위원이 기금운용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손실 발생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③ 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.

제9조(업무협조)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무관장)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.<개정
2020.08.00>

제11조(기타)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8월 00일부터 시행한다.